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중능분화재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12. 19. (화요일), 14:00 ~ 18: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홍승재(위원장), 김문식, 남효대, 배용규, 소현수,
심경미, 장호수, 조재모, 헤 도(이상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남양주 영빈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2 |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2개동)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
| 3 |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
| 4 |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 |
| 5 |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 6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7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
| 8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양광 설치 |
| 9 | (사적)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10 | (사적)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11 | (사적)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12 | (사적)서울 영회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 13 | 종묘 촬영허가신청(tvN 사극 ‘월경’) |

【보고사항】

- | | |
|---|------------------------------------|
| 1 | 광화문 월대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 보고 |
| 2 | 조선왕릉동부지구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 |
| 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2-01

1. 남양주 영빈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16 일대
 - 사업내용
 - 허용기준 1구역(일부)을 2구역으로 조정, 허용기준 2구역(전체)을 3구역으로 조정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1) 남양주 영빈묘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공람 의견서(○○○ 외 117인)

- 영빈묘 주위는 다른 문화재에 비하여 농지 및 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1구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2구역 또한 다른 문화재에 비하여 문화재 구역과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3구역은 문화재 구역과 접촉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지역 구역조정을 하여주시거나 보존지역 구역별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 보존지역 구역조정을 세부적으로 건의드리면
 - 1구역 : 현 1구역에서 문화재 외곽경계면 점점 임야지역으로 최소화하여 축소조정
 - 2구역 : 현 1구역 중 축소 조정한 나머지 구간을 2구역으로 설정
 - 3구역 : 현 2구역과 현 3구역을 3구역으로 통합하여 3구역으로 확대 조정
 - 4구역 : 동일기준
- 보존지역 구역조정이 어려우면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드립니다

	평지붕	경사지붕
1구역	5m 이하	7.5m 이하
2구역	8m 이하	12m 이하
3구역	11m 이하	15m 이하

- 위와 같이 규제가 완화되면 토지소유 주민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하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현지조사의견(‘23.12.12./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영빈묘의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것으로 묘역으로부터의 외부조망 및 일체적 관리를 고려하여 현재의 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 다만, 허용기준 제도의 취지를 적극 소개하여 조화도를 고려한 허용기준 초과 행위 및 현 개발정도 수준에서의 건축행위는 가능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2.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2개동)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2개동)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2개동) 부지조성 및 신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1년 사적분과 소위원회('21.4.28.),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21.11.16.), '22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22.1.18.)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3년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23.10.17.) / 보류 : 해당 부지에 대한 허용기준 재조정에 관한 주민 건의와 남양주시의 검토절차가 진행 중이고 동절기 경관의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완, 확인하여 재심의토록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36 외 1(문화재구역에서 157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2개동) 부지조성 및 신축

구분	1차 (‘21.4.28./부결)	2차 (‘21.11.16./부결)	3차 (‘22.1.18./부결)	4차 (‘23.10.17./보류)	금회(안)
대지면적	2,974㎡	1,374㎡	1,374㎡(건축부지) 1,729㎡(도로형질변경) 총 3,103㎡	1,124㎡(건축부지) 1,432㎡(도로형질변경) 총 2,556㎡	좌동
건축 (연)면적	544.80㎡ (961.60㎡)	247.56㎡ (384.84㎡)	273.60㎡ (273.60㎡)	추후 건축 심의	149.5㎡(149.5㎡) 가·나동 : 74.75㎡
건축규모	지상2층, 8동	지상2층, 4동, 경사지붕(H:7m) 목구조	지상1층, 4동, 경사지붕(H:4.15m), 목구조	추후 건축 심의	지상1층, 2동, 경사지붕(H:4.24m), 경량철골구조
부지조성	콘크리트 포장 (1,638.5㎡) 보강토옹벽 L:385.7m (H:0.0~4.9m) 역L형옹벽 195.7m (H:0.0~4.5m) 법면조성(500㎡)	콘크리트 포장 (1,611.5㎡) 보강토옹벽 L:124.3m (H:0.0~3.0m) 역L형옹벽 175.1m (H:0.0~4.9m) 법면조성(131.6㎡)	콘크리트 포장 (1,611.5㎡) 보강토옹벽 L:124.3m (H:0.0~3.0m) 역L형옹벽 L:175.1m (H:0.0~4.9m) 법면조성(131.6㎡) 성/절토량 2,826㎡/1,116㎡	콘크리트 포장 (1382.5㎡) 보강토옹벽 L:82.3m (H:0.0~1.0m) 역L형옹벽 L:131.4m (H:0.0~2.0m) 자연석쌓기 L:92m (H:0.0~2.0m) 법면조성(22㎡) 성/절토량 483.3㎡/72.3㎡	좌동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1.4.19./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는 남양주 영빈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70m 정도 떨어져 있는 1구역에 해당함
- 남향하고 있는 영빈묘에서 전면에 조망되는 위치로 지형·지맥의 보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현지조사 의견('21.9.2./문화재전문위원 ○○○)

- 남양주 영빈묘로부터 157m 이격되어 있는 단독주택 신축에 대한 것으로, 이전 부결안에 비해 사업대상지를 축소하고 절성토의 양을 줄여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한 의도가 보임
- 다만, 문화재로부터 근접해있으며 지대가 높아 문화재로부터 외부조망에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함

(3) 현지조사 의견('23.9.11./문화재위원 ○○○, ○○○)

- '21.4.28.부터 3회 부결되고 금회 수정안을 올린 사안이며 기존안에서 도로를 변경하고 축대를 낮추고 건축규모를 축소하였음
- 도로변 자연석 쌓기 후면 사면은 조경녹지로 처리할 것(옹벽단차 해소요소)
- 영빈묘에서 대상지, 대상지에서 영빈묘를 바라보는 사진 촬영하여 제시할 것
- 문화재(영빈묘)에서 가시되지 않아 문화재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3.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1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45-13번지 외 1
(문화재구역에서 465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4구역(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공사
 - 대지면적 : 397m²
 - 건축면적/연면적 : 79.20m² / 158.40m²
 - 건축규모/최고높이 : 1개동, 지상2층, 경량목구조 / 9.3m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동일부지 22년 공능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부결 이력
 - 최고높이 9.85m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사유로 부결되었음
 - 심의의견으로 건축물 높이 9.3m 이하로 조정안 제시한 바 있음
- (2) 현지조사의견('23.12.12./문화재위원 ○○○, ○○○)
 - 기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기준(건축물 높이 9.3m)을 충족시켰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부지 내 조경, 인근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4.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휘경원」 주변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휘경원 주변에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휘경원(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6-3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9-11 외 1필지
(문화재구역에서 108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이하/주택 및 근생시설만 허용)
 - 사업내용 : 농수산물 보관창고 신축공사
 - 대지면적 : 588㎡
 - 건축면적/연면적 : 66.00㎡/66.00㎡
 - 건축규모/최고높이 : 1개동, 지상1층, 경량철골구조 / 4.7m
- (4) 신청인 의견
 - 창고시설을 신축하여 농사용 기계 및 농기구를 보관·사용하고자 합니다.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3.12.12./문화재위원 ○○○)
 - 본 건물은 창고용 건물 신축을 위해 제안한 건물로 주변여건을 보았을 때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의 형태, 재료, 색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이 필요함.
 - 특히, 문화재 주변의 기개발된 건축물의 풍경을 고려하여 경관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부결 9명

5.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23년 11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5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0㎡
 - 건축(연)면적 : 164.7㎡(164.7㎡)
 - 건축규모/최고높이 : 1개동, 지상1층, 일반철골구조 / 4.5m
 - 부지조성 : 잡석포장 525㎡
 - 피해방지웁스(H:1.5m) : 104m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1.16./문화재위원 ○○○, ○○○, ○○○)
 - 온릉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역의 건축건으로 추후의 경관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필지의 통합과 분할이 이뤄진 지역으로 향후 추가 건축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역 전체의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부지 외부공간의 차폐 계획 등을 보완하여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6.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4, 788번지
(문화재구역에서 21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53㎡
 - 건축(연)면적 : 155.07㎡(155.07㎡)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0.5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도로면적 : 530㎡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문화재로부터 210m 이격된 1구역 내의 단독주택 허가에 관한 현지조사 건임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3m로서 건릉으로부터 직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건릉이 직접 관찰되는 지역이므로 건릉 방향으로 계획 건축물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사진자료를 보완하여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건릉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7.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93번지
(문화재구역에서 23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신축
 - 대지면적 : 726㎡
 - 건축(연)면적 : 158.91㎡(158.91㎡)
 - 최고높이 : 4.3m
 - 건폐율 : 21.89%
 - 건축규모 : 지상 1층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문화재로부터 210m 이격된 1구역 내의 단독주택 허가에 관한 현지 조사 건임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4.3m로서 건릉으로부터 직접 조망될 것으로 예상됨

- 건릉이 직접 관찰되는 지역이므로 건릉 방향으로 계획 건축물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사진자료를 보완하여 주변 환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음
- 건릉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보류 9명

8.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양광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8-714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53m 이격)
 - 허용기준 5구역(평지붕 14m 이하/경사지붕 18m 이하)
 - 사업내용 : 태양광 설치
 - 최고높이 : 15.80m
 - 모듈 : 600W×51EA
 - 전체부피 : 417.58m³
 - 수평투영면적 : 138.16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검토의견

- (1) 현지조사 의견('23.12.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문화재로부터 353m 이격된 5구역 내 옥탑층 태양광 설치에 관한 현지조사임
 - 기존 옥탑층 최고높이가 15.6m로서 기준인 14m를 초과한 상태이며 신청 시설물 높이는 옥탑으로부터 2.5m 초과하였으므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
 - 시설물을 한 판이 아닌 여러개의 판으로 분할하여 옥탑 높이 이내로 재설계할 것을 권장하였음
 - ※ 현지조사 이후 도면 수정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9. (사적)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공릉동)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0-138호, 2010.12.31.)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소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서울시 노원구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노원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0. (사적)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정릉 및 서울 의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정릉(사적) / 서울 의릉(사적)

○ 소재지

- 서울 정릉 :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19길 116(정릉동)
- 서울 의릉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석관동)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서울 정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심의구역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조정안(서울 정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개별검토	
4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재건축(재개발)은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현행(서울 의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높이:면적)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장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산업단지,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조정안(서울 의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서울시 성북구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공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성북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1. (사적)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재 사적 「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연산군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연산군묘(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7길 46(방학동)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심의구역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소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이하	○ 최고높이 7.5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1m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4m이하
5구역	○ 개별검토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 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서울시 도봉구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도봉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2. (사적)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사적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영취원과 송인원(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90(청량리동)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0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높이:면적)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 지붕은 경사비율의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1/8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장사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산업단지,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등과 같이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 적용)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를 재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협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시설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7m이하	○ 최고높이 20m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 지붕색상-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에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신청인 의견 : 주민 등 의견 청취 공람 공고 결과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

- 금회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허용기준 조정 신청건은 행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 청에서 2021~2022년 추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1,2차) 용역 결과에 따라 신청된 사항임
-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 및 자치단체 담당부서의 상호 검토를 거쳐 조정안을 최종 마련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동대문구의 의견과 동일하게 허용기준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금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13. 종묘 촬영허가신청(tvN 사극 ‘원경’)

가. 제안사항

tvN 사극 ‘원경’ 종묘 촬영 신청 1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촬영 신청 검토 결과 촬영콘티 및 극 설정상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는지 등에 관한 심의 필요
- 「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 제2조 제2항 제1호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 (3) 신청내용
 - 위치 : 종묘 영녕전
 - 사업내용
 - 촬영명 : tvN 사극 ‘원경’ 촬영
 - 촬영내용 : 종묘에 알현하는 방원과 종친들, 세자 양녕 촬영(1405년 10월)
 - * 대사 없음
 - 반입장비 : 장비탑차 2.5톤 1대, 카메라탑차 1톤 1대, 촬영카메라 2대, 조명 4대, 음향장비 등
 - 일정 및 세부 내역

일자	시간	내용	촬영인원
2024. 1. 30.(화)	09:00-10:00	이동 및 준비	99명(출연자 30명, 스태프 등 69명)
	10:00-11:00	촬영	
	11:00-12:00	정리 및 철수	

- (4) 신청인 의견 : 태종과 종친들, 세자가 종묘에서 알현하는 내용을 실제 종묘 영녕전에서 촬영하여 드라마의 품격을 높이고자 함

라. 검토의견

- 전각 외부에서의 촬영이며 대형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아 문화재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태종과 종친, 세자에서 알현하는 극 설정 등이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무리가 없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예법, 시대적 배경 등 역사적 상황에 맞도록 추진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3-12-14

1. 광화문 월대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경복궁」 광화문 월대 관리를 위해 사전에 기반시설 구축 및 현판 경관 조명 개선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후 안전사고 및 관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현판 경관 조명의 개선 등에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개선 등의 조치 후 보고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 (사적)
 -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보고내용
 - 위치: 광화문 주변
 - 사업내용
 - 광화문 월대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 완료

구분	세부내용
초소제작 설치	- 규격(6000×3100×3050) 1개소 설치
월대용 CCTV 설치	- 회전형 cctv: 2대, 고정형 cctv: 2대 - 서버, 광분배함 등 설치
월대용 방송장비 설치	- 옥외스피커 및 방송 AMP EM 등 설치

- 광화문 현판 경관조명 개선

구분	세부내용
LED 라인조명 설치	- LED 70W 4.2m를 철물 구조에 설치 운영 (W850×L4200)

(4) 신청인의견

-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의 상징성,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관리 기반시설 구축 및 경관 조명 개선을 통하여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접수 9명

2. 조선왕릉동부지구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

가. 제안사항

조선왕릉동부지구 내 사적 「구리 동구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남양주 광릉」 주차장 전기차충전기 설치사업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공중이용시설(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에 따라 시행하고자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 됨에 따라 해당 차량 이용 관람객 편의 증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
- 남양주 홍릉과 유릉(사적),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 352-1
- 남양주 광릉(사적),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3) 신청내용

대상문화재	위치	사업내용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56-22 외 1필지 (문화재구역)	○ 주차장 북쪽 충전기 3기(1기당 2면 수용 가능) 설치 * 굴착, 캐노피 설치 포함
남양주 홍릉과 유릉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437-2 외 1필지 (문화재구역)	○ 주차장 북쪽 충전기 2기(1기당 2면 수용 가능) 설치 * 굴착, 캐노피 설치 포함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8-1 (문화재구역)	○ 주차장 남쪽 충전기 2기(1기당 2면 수용 가능) 설치 * 굴착, 캐노피 설치 포함

(4) 신청인 의견

-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선왕릉동부지구 내 주차장에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 필요
- 강우 시 충전기 사용에 따른 감전주의와 배터리 옆 폭주 충전으로 전기차 화재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내문 설치 및 지자체 등록을 할 예정임
- 주차장 권역 내이며, 문화재 경관저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1) 현지조사 의견('23.9.22., 12.5./문화재위원 ○○○)

- 주차장 내 충전기 설치는 문화재보호 등 전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충전기 위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차 충전 중 화재와 감전사고 위험이 있어 강우 시 전기충전사용 주의사항 안내문 부착할 것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접수 9명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남양주 사릉	경기도 남양주시	○○○	<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산65-33 외 1필지 (2구역/문화재구역과 16m 이격) ○ 사업내용 : 창고시설 부지 진출입로 개설 - 대지면적 : 2,897㎡ - 신청면적 : 102㎡ - 도로 폭 7.7~16.8m, 길이 12m - 아스콘 포장(t:75cm) 102㎡, 도로경계석 (150*150*1000mm) 28m, 흡관(D:400mm) 11.4m	허가	'23.11.29.
(사적) 양주 온릉	경기도 양주시	○○○	<농업용창고 조성>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103-51번지 (1구역/문화재구역과 12m 이격) ○ 사업내용 : 농업용창고 조성 - 대지면적: 2,043㎡ - 건축면적(연면적): 149㎡(149㎡) - 건물높이: 5.5m(경사지붕) - 건축규모: 지상1층, 1동, 경량철골조 - 절토량: 324.5㎡ ※ 2021.10.15.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3.11.29.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주유소 내 자동세차장 증축(허가변경)>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46 (4구역/문화재구역과 200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연)면적 : 58.73㎡ → 70.45㎡ - 최고높이 : 4.1m → 4.45m - 자동세차장 위치 변경으로 인한 면적 및 높이 증가	허가	'23.12.4.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장릉	경기도 파주시	○○○	<p><기존사면 성토 및 구조물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98-2 번지 외 1필지 (3구역/문화재구역과 80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459㎡ - 총성토량 : 2,147.04㎥ - L형옹벽(H:1.0~4.7m) : 95m 설치 	허가	'23.12.11.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 접수 9명